

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조금·지방교부세·재정 투·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 신설).
- 이 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되는 제물포구·영종구·검단구 및 서구의 구청장과 구 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중구·동구·서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사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함(안 부칙 제3조제4항).
-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으로 신설되는 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).
- 중구·동구·서구의회의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신설되는 구의 의장이 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둠(안 부칙 제5조).

II. 검토의견

-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가는 지방정부간 통합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 중¹⁾이며, 자치구 분리·신설에 따른 비용은 자치사무인 지방정부

1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0조(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) ① 국가는 지방자치 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(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)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지방정부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, 개정안 제3조의 국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아래 표와 같이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<안 제3조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>

개 정 안	기획재정부 의견
제3조(재정지원에 관한 특례)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<u>비용을 지원하며</u> , 보조금·지방교부세, <u>재정 투·융자 등</u>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3조(재정지원에 관한 특례) ----- ----- ----- ---비용에 대해서는----- -----재정 투자·융자----- -----.

- 그 밖에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, 가운데점 사용시 의미단위로 묶어 주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 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병 섭)

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·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·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.